광 주 고 등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노177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피 고 인 김경일 (58***-1*****), 공무원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윤대진(기소), 김성훈, 신희영, 이주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성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고합43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선방송을 실시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남겼고 부하 직원들에게 구조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무능력한 것에서 나아가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을 기만하기까지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국가기관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① 세월호의 전복 사고 및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주된 책임은 회 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승객들을 저버린 세월호의 선장선원들에게 있는 점. ② 피고 인은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한 소형 경비정의 함장으로서 평소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 객선의 조난사고에 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인을 '현장지휘관'으 로 지정한 후에도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는 2014. 4. 16. 09:36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로 전화를 걸어 2분 22초 동안 통화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등에서도 피고인 과 TRS로 20여회 통신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조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평소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 으므로, 피고인에게만 피해자들의 사망상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 한 점. ④ 피고인이 34년 동안 해경으로 일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처와 취업을 앞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 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6)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